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응시생이 면접시간에 늦어 불합격하였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331, 332, 333,
334

청 구 명 :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기태)

피신청인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16.

처리결과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으로 어느 입시생이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신청인 철도노조는 사건 당일 열차 운행은 조기 정상화되어 학생의 지각과는 무관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내용은 관계인들을 만나 확인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중재부는 면접 응시생의 열차탑승역과 시간을 정정하고 응시생의 불합격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는 취지의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부인하는 보도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동 소제기가 되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 자)

내 용 :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의정부로 가던 열차가 구로역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자 승객들이 선로로 뛰어내리고 있다.

“그날 아침 열차만 멈추지 않았더라면...” 경기도 시흥시 ○○고등학교 3학년 이○○(18)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군은 27일 오전 7시 소사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서울대 ○○학과의 2차 전형인 면접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는 1차전형을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열차가 오지 않았다. 그때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구로역의 이날 사고는 철도 파업 이틀째를 맞아 투입된 대체인력인 군 기관사가 구로역의 지리를 몰라서 생겼다. 이 때문에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가량 지연됐다.

이군은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군 부모는 아들을 배웅한 뒤 각자의 일터로 나선 뒤였다. 이군 어머니는 “서울대에 전화했는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꼭 9시까지 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야속해했다. 아들에게 전화해 침착하라며 버스를 타라고 일렀지만 쿵광거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어려웠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버스 승강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군은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가까스로 서울대에 도착했다. 9시 20분이었다. 면접은 불허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철도파업과 ○○고등학교 이○○군의 서울대 면접 지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2009년 12월 4일자 1면 기사에서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에 ‘철도파업으로 투입된 대체인력 군 기관사가 구로역에서 사고를 내’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 가량 지연됨으로써’ ‘○○고등학교 이○○군이 9시까지인 서울대 면접이 불허되어’ 결과적으로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사역은 7시를 전후해 전동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서울대 면접실 입실시각은 8시 15분이었으며 이○○군은 소사역에서 7시 41분 전동차를 탄 것이 확인되어 철도파업이나 구로역 사고와는 관계없이 면접시각에 이미 늦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사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331 · 332, 333 · 334 (병합)

청 구 명 :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504

위원장 김 기 태

대리인 지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2. 조인스닷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12층

대표이사 김 영 환

대리인 양 ○ ○

주 문 : 1. 피신청인 1.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불 기회”)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 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

인스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1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을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 1, 2가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1,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가.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나. 내 용 : 본지는 2009년 12월 4일자 1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에서 ‘소사역에서 7시에 전철을 기다리던 학생이 구로역 사고로 9시까지 입실해야 했던 서울대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학생은 소사역이 아닌 부천역에서 7시 20분을 전후해 전철을 기다리다가 7시 30~40분 사이 지하철을 탄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실 시각도 8:15이었던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수험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한 것이 철도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활동 비공개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408

청 구 명 : 장정청구

신 청 인 : 문형배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2.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반론보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신청인은 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연구회는 5차례의 논문집 발간과 여러 번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해체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 자)

내 용 :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최근 법원 사태의 와중에서 제기된 해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사법시험 31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우리법연구회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 올해 안으로 논문집을 내고 회원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며 해체 요구를 일축했다. 오 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체 요구 등)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 120여명 중 15명가량이 참석했으나, 회의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과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로 회원 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이 모임 소속 판사 명단 129명의 이름과 소속을 폭로하자, 지난 연말 총회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누가 탈퇴했고 누가 입회했는지는 여전히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사법시험 28회)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해체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판사는 최근 논란이 된 ‘튀는 판결’의 상당수는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다고 해도 권력자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우리법연구회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2일 자 사회면에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과동’을 계기로 결성된 이후로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우리법연구회는 논문집을 5집까지 발간하였고, 그 속에는 발표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9. 10. 10., 2008. 9. 27., 1998. 11. 21.을 포함하여 비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차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www.urilaw.or.kr)에 창립 이래 지금까지 활동 내역과 최근 세미나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2010년 2월 22일 자 A10면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해체 안할 것”』 제하 기사에 대해 이 모임 前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10일에 공개세미

나를 개최한 일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3월 25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 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민주노총 대표가 노조가 우리 사회의 천덕꾸러기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815, 816

청 구 명 :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0. 4.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 민주노총은 노사관계학회 주최 모임에서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중재부는 신청인 위원장의 발언보도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반론보도를 권고 하자 당사자는 이를 수용,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노총 위원장,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 자 A1면)

내 용 : 민주노총 김영훈(42) 위원장이 3일 “앞으로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국노사관계학회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을 연대 · 평등 · 평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최영기 노사관계학회장이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반 노동적인 현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해 대정부 투쟁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투쟁’이란 실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쟁적 민노총’이란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쟁적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지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노총 관계자는 4일 “예전에도 신임 위원장들은 온건 노선을 얘기했지만 변한 게 없었다”며 “김 위원장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민주노총 위원장의 쇠파이프 발언 보도,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 3월 5일자 기사 <민노총 위원장, “쇠파이프 버리겠다”> 중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 모임에서 한 말로 보도된 “앞으로는 쇠파이프를 버리고~”와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등의 인용문과 기사제목은 사실내용과 다르게 와전된 잘못임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3월 5일자 A1면 “민노총 위원장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김영훈 위원장 발언 취지는 민주노총 하면 쇠파이프가 떠오르게 되는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내겠다는 의미였고, ‘천덕꾸러기’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0년 4월 23일자까지(토요일자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1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밝혀왔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 자 A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